



미국의 가정용 전자폐기물(E-Waste)에 관한 입법현황(일리노이 주 입법을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현대 개인의 “버리는 문화(disposable culture)”는 전자 폐기물(Electronic Waste; 이하에서는 E-Waste)의 형태로 환경과 개인에게 유해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미국의 연방환경법규는 지금까지 가정에서 폐기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연방법의 적용에서 배제하였다. 대신에 각 주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정용 전자폐기물에 대한 입법을 하여 지금까지 17개주와 뉴욕시가 특정 가정용 전자폐기물을 규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08년 9월 17일 일리노이 주에서 대단히 포괄적이고 상세한 가정용 전자폐기물 관련법을 제정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가정용 전자폐기물과 관련해서는 ① 제품관리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점, ② 문제와 해법에 대한 인식공유가 확립되지 않은 점, ③ 기존의 행위를 변경케 할 제조사 등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주의 입법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① 제품 수집 및 재활용 프로그램 가동
- ② 제품구입시점에 있어서의 소매업자에 의한 소비자 교육
- ③ 소비자 중고제품 반환 인센티브의 창출
- ④ 제조자의 비용책임
- ⑤ 각 주 환국보호국 감시 및 제재조치 등의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폐기물의 수집에 대한 인센티브도입 등

본 고에서는 미국의 연방 및 각주의 입법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일리노이 주의 입법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II. 전자폐기물의 개념 및 유해성

전자폐기물(E-Waste)이란 기계의 오작동(malfunction), 소모(exhaustion) 또는 퇴행(obsolescence) 등의 이유로 버려진 모든 전자적 기계

나 기구라고 정의될 수 있다.¹⁾ 각 주 입법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전자폐기물은 가정용(household)에 한정되고 그 중에서 특정 종류에 한정된다(예를 들어, 일리노이 주의 경우, 텔레비전, 컴퓨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가 규제대상 전자제품(Covered Electronic Device)이다). 따라서 산업용, 상업용 전자장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가정용 전자제품 중에서도 각 주마다 규제대상이 되는 폐기전자제품의 종류가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대체로, 규제 전자폐기물은 구식이 되어버리거나 고장나거나 안팔리는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 핸드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스테레오, 비디오 게임기 등까지 포함한다.

문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전자폐기물도 많은 유해한(hazardous)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1000가지 이상의 구성물질에는 중금속, 즉, 납, 수은, 카드뮴 뿐만 아니라 브롬처리된 난연제(難燃劑)(brominated flame retardants), 폴리염화비닐(Polyvinylchloride), 플라스틱, 가스까지 존재한다. 텔레비전과 컴퓨터에 있는 브라운관(Cathode ray tubes: 음극선관)은 4에서 8파운드의 납을 포함하고 있다. 평면패널

텔레비전과 모니터는 납은 비교적 적은 대신에 수은을 사용하고 있다(차 순가락 70분의 1정도의 수은만으로 20에이커에 달하는 호수를 오염시키고 물고기를 먹을 수 없게 만든다). 쓰레기 매립지에 있는 중금속의 거의 40퍼센트가 전자폐기물로부터 온다.²⁾ 미국의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2005년에 미국이 2백 63만톤의 전자폐기물을 발생시켰고 그 중 87.5퍼센트가 매립지로 가거나 쓰레기소각로(incinerator)에 묻혔다고 산정하고 있다.³⁾ 오직 12.5퍼센트만이 재활용된 것이다. 국제전자제품 재활용자 연합(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lectronics Recyclers)에 의하면 30억 유닛(3 billion units)이 10년 이내에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⁴⁾

III. 연방정부와 각 주의 입법현황

1. 자원보존및회복법(RCRA)과 가정배출 전자제품에 대한 입법공백

미연방의회는 전자제품 등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차례 입법노력을 하였지만, 연방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현재 가정용 전자폐기물 재활용을 강제하는 연방법은 제정되지

*** -----

1) Jennifer Kutz, *You've got waste: the exponentially escalating problem of bazardous e-waste*, 17 Vill. Envtl. L.J. 307, 307 (2006).

2) Brooke Oleen, *Reduce, Re-Use and Recycle: Managing E-Waste*,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LEGISLBRIEF Vol. 16, No. 23 (April/May 2008).

3) *Id.*

4) Tamra Spielvogel, *Dispensing with Indispensable*, SEPTEMBER 2006 STATE LEGISLATURES (Sep. 2006).



않은 상태이다.⁵⁾ 하지만 많은 주정부들은 이미 전자폐기물 재활용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⁶⁾ 미 환경보호국(EPA)은 여러가지 자발적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전자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⁷⁾ 현재 각 주의 전자폐기물관련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제품 생산자들과 재활용관련 사업자들은 연방정부가 전국가적인 해법을 개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의 환경법규는 일반적으로 제품(products)에 관한 제조과정(manufacturing phase)에서 생기는 '독성물질 방출(toxic emissions)'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⁸⁾ 역사적으로 미국의 환경법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방법(how products should be made)이나 생산에 사용되는 구성물질(materials that should be used)에 대해서는 거의 규제를 하지 않았다.⁹⁾ 1976년 미 연방의회는 '자원보존및회복법(th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RCRA))'을 제정하여 '고체 폐기물(solid waste)'의 관리에 대한 전미 차원의 정책기초를 확립시켰다.¹⁰⁾

본 법은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s)의 폐기, 운반, 저장 및 처리에 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과 광범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였다.¹¹⁾ 자원보존회복법하에서 미연방 환경보호국(US EPA)는 전미 유해 폐기물관리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시행규칙¹²⁾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연방규칙(CFR) 타이틀 40하 260조에서 282조까지는 '고체 폐기물(Solid Waste)'을 정의하고 유해한 폐기물을 선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은 모든 전자폐기물의 발생자(generator)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즉, 본 법 규정들이 대부분의 사업체와 기관에 적용되지만, 가정(households)이나 기타 소량의 폐기물 발생자(small quantity generators)¹³⁾는 적용에서 배제된다.¹⁴⁾ 따라서 일반 가정과 소량 폐

*** -----

5) 이하 <http://www.epa.gov/epawaste/conservate/materials/ecycling/rules.htm#legis>.

6) 각 주의 입법 현황에 대해서는 <http://www.ecyclingresource.org/ContentPage.aspx?Pageid=28&ParentID=0>; http://www.e-takeback.org/docs%20open/Toolkit_Legislators/state%20legislation/state_leg_main.htm. 참조.

7) See generally,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Product Stewardship, <http://www.epa.gov/epaoswer/non-hw/reduce/epr/products/electronics.htm> (last visited Mar. 21, 2007).

8) Noah Sachs, *Planning the Funeral at the Birth: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30 Harv. Envtl. L. Rev. 51, 88 (2006).

9) *Id.*

10)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42 U.S.C. § 6901, 6902.

11) 42 U.S.C. §§ 6901-6992k.

12) 40 C.F.R. §§ 260-282.

13) '소량폐기물 발생자'란 한달(calendar month)에 220 파운드(100킬로그램)이하의 '유해 폐기물(hazardous waste)'을 발생시키는 자 또는 단체(entities)를 가리킨다.

기물 발생업체는 TV 브라운관 등 유해한 음극선관을 가진 중고 전자제품을 쓰레기 매립지에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다. 이는 연방법하에서 가정들은 자유롭게 전자제품을 포함한 유해 폐기물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방법상의 공백때문에 각 주는 각각의 입법을 하고 있다. 한편, 미 환경보호국(EPA)는 자발적 준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공백을 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¹⁵⁾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강제력이 없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행위(voluntary action)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아무튼, 이러한 노력의 결과, 주요 전자제품 제조업자들과 소매업자들은 자발적인 제품수거(take-back)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¹⁶⁾

최근 2005년에 연방정부는 전자폐기물 이슈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양정당의 의원으로 구성된 전자폐기물 워킹그룹(Congressional E-Waste Working Group)을 결성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전자폐기물 처리문제를 다루기 위한 해법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¹⁷⁾ 이러한 워킹 그룹이 당면하고 있는 주된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그램

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consensus)를 도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미 2007년 9월 미연방 ‘의회리서치서비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는 주정부의 전자폐기물입법에 대한 분석안을 제출한 바 있다.

2. 전자폐기물의 국가간 수출입문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폐기처분을 통제하는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이 1989년 채택되고 1992년부터 발효하기 시작하여 유해폐기물의 수출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다. 현재 170여개국에 본 조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하지만, 미국은 1990년 본 조약에 서명하고, 상원에서 1992년 가입(ratification)에 대한 자문 및 동의서(advise and consent)를 제출하였지만, 아직 추가적인 필요 입법행위를 미루어 아직 바젤협약의 효력을 받지 않는 비가입국(non-party)의 상태에 있다.¹⁸⁾ 따라서, 미국의 제3세계에 국가로의 전자폐기물 등의 수출이 여러 부

*** -----

14) 40 C.F.R. § 261.5(f)(3)(소량폐기물 발생자 적용면제); 40 C.F.R. § 261.4(b)(1) (가정 적용면제).

15) See generally,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Product Stewardship, <http://www.epa.gov/epaoswer/non-hw/reduce/epr/products/electronics.htm> (last visited Mar. 21, 2007).

16) Sony는 미네소타 주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는 제품수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Apple사도 iPod제품을 재활용을 위해 수거할 것을 최근에 발표했으며, 대형 컴퓨터 회사들인 Dell, IBM, and Sony 와 소매상인 Best Buy 도 제품수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17) Tamra Spielvogel, *Cradle-to-Grave Electronics Management*, VOL. 13, NO. 47 (Nov. Dec. 2005); Brooke Oleen, supra note 2.



문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미 상사부 (Department of Commerce)는 재활용을 위해 수집된 전미 전자폐기물의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가 해외로 운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⁹⁾ 문제는 전자폐기물의 수입국가의 전자폐기물 해체 및 처리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2008년 7월 31일 “의회인식(Sense of Congress)결의안”²⁰⁾이 하원에 제출되고, 2008년 9월 17일에는 상원 결의안이 마찬가지로 상원에 제출²¹⁾되어, 독성 전자폐기물을 개발도상 국가들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3. 각 주의 입법현황

현재 미국의 17개 주정부와 뉴욕시가 가정용 전자폐기물 재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한 상태에 있다. 미국의 각 주정부가 취한 입법양식으로 ‘생산자확대책임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와 ‘재활용비용선불제(Advanced Recycling Fee; ARF)’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²²⁾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16

개 주와 뉴욕시는 제품 생산자가 폐기물 수집 및 재활용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확대책임제(EPR)’를 취하고 있다. 오직 캘리포니아 주만 ‘재활용비용선불제(ARF)’를 2004년 도입하여, 소비자가 6달러에서 10달러의 처리비용을 소매제품판매자에게 제품구입시 지불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각 주의 입법현황은 이하와 같다.²³⁾

Year Law Passed	State / City Passing Law
2003	California
2004	Maine
2005	Maryland
2006	Washington
2007	Connecticut Minnesota Oregon Texas North Carolina
2008	so far New Jersey New York City Oklahoma Virginia West Virginia Missouri Hawaii Rhode Island Illinois - To be signed by Governor on 9/17/08.

18) <http://www.state.gov/g/oes/env/c18124.htm>.

19) Brooke Oleen, *supra* note 2.

20) House Resolution 1395. Available at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doc.cgi?dbname=110_cong_bills&docid=f:hr1395ih.txt.pdf.

21) Senate Resolution 663. Available at <http://www.thomas.gov/cgi-bin/query/z?c110:S.RES.663>.

22) http://www.e-takeback.org/docs%20open/Toolkit_Legislators/state%20legislation/state_leg_main.htm.

23) *Id.*

IV. 2008년 9월 17일 제정된 일리노이 주 전자 폐기물법

가장 최근에 제정된 전자폐기물법으로서 일리노이 주의 법률이 있다. 일리노이 주의 ‘전자제품 재활용 및 재사용법(the Electronic Products Recycling and Reuse Act)’²⁴⁾은 2008년 9월 17일 부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일리노이 주는 본 법에 대해서, 전자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면에서 전미에서 가장 적극적인 입법이라고 자평하고 있다.²⁵⁾ 또한 이전의 타주 법률들과 비교할 때 총 23개조항으로 구성되고 대단히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인(comprehensive) 입법양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⁶⁾

본 법은 특정 폐기전자제품, 즉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규제전자장치(covered electronic devices)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본 법하에서의 프로그램 시행 첫번째 년도는 2010년이고, 전자제품 제조자, 소매업자, 주 환

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으로 하여금 폐기되는(obsolete) 가정용 전자제품의 관리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타 주들과 마찬가지로 일리노이 주도 제조자확대책임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시행하여 제조자를 주된 책임의 주체로 하였고, 정부와 소비자는 비용 부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제조자가 등록의무를 지는 규제전자제품의 종류를 4가지 즉, 텔레비전, 컴퓨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규제가능전자제품(EED)의 항목을 만들어 핸드폰, PDA 등도 재활용의 대상으로 수집이 가능케 하였다. 아무튼, 본 법에 의해 제조자들은 이들 폐기제품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재사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단, 지방정부는 물론 이들 제조업자나 재활용업자들과 협력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법의 목차는 이하와 같다.

구체적인 섹션 별 내용을 보면 이하와 같다.

일리노이 주 ‘전자제품 재활용 및 재사용법’ (2008년 9월 17일 발효)

Section 1. 소제목(short title). 본 법은 ‘전자제품 재활용 및 재사용법’으로 인용될 수 있음.

24) Senate Bill 2313, Public Act 095-0959. Full text is available at <http://www.ilga.gov/legislation/publicacts/95/095-0959.htm>. 본 법은 2008년 7월 10일 의회를 통과하고 9월 17일 일리노이 주지사에 의해 서명됨으로서 법률로 탄생하고 그 즉시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25) ROD R. BLAGOJEVICH - Illinois State GOVERNOR, Governor Blagojevich Signs Landmark Recycling and Reuse E-Waste Law, State of Illinois Office of Governor News (Sep. 17, 2008). Full text is available at <http://www.illinois.gov/PressReleases/ShowPressRelease.cfm?SubjectID=3&RecNum=7152>.

26) 예를 들어, 2008년 1월 15일에 제정된 뉴저지 주의 법률 ‘전자폐기물 관리법(Electronic Waste Management Act)’은 21개 조항



- Section 5. 사실인정 및 본 법의 목적(Findings and purpose)
- Section 10. 정의(Definitions).
- Section 15. 주 전체 규제전자장치(CED) 재활용 및 재사용 목표량(Statewide recycling and reuse goals for all covered electronic devices).
- Section 16. 모든 텔레비전 제조자에 대한 주 전체 재활용 또는 재사용 목표량(Statewide recycling or reuse goal for all television manufacturers).
- Section 17. 모든 컴퓨터, 모니터 및 프린터 제조자에 대한 주 전체 재활용 또는 재사용 목표량(Statewide recycling or reuse goal for all computer, monitor and printer manufacturers).
- Section 18. 시장 점유율과 리턴율의 결정(Determination of market shares and return shares).
- section 19. 개인 제조자에 대한 재활용 및 재사용 목표량(Recycling or reuse goals for individual manufacturers).
- Section 20. 일리노이 주 환경보호국 책임(Agency responsibilities).
- Section 30. 제조자의 책임(Manufacturer responsibilities).
- Section 40. 소매업자의 책임(Retailer responsibilities).
- Section 50. 재활용자 및 재가공자 등록(Recyclers and refurbisher registration).
- Section 55. 수집자의 책임(Collector responsibilities).
- Section 60. 저개발 지역에 대한 수집 전략(Collection strategy for underserved counties).
- Section 65. 주 정부의 획득(State government procurement)
- Section 70. 연방법과의 관계(Relation to federal law).
- Section 75. 부분 실효의 원칙(Severability).
- Section 80. 벌금(Penalties).
- Section 85. 전자제품 재활용 펀드(Electronics recycling fund).
- Section 90. 타 주 법률과의 관계(Relation to other State laws).
- Section 95. 매립금지(Landfill ban).
- Section 900. '주 재정법(State Finance Act)' 은 '전자제품 재활용 펀드(The Electronics Recycling Fund)' 항목을 삽입하여 개정됨.
- Section 999. 효력발생일(Effective date). 법으로 성립된 즉시 효력발생함.

1. 사실인정 및 입법목적

섹션 5는 일리노이 주 의회(General Assembly)에서 발견한 사실인정을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폐기전자제품이 쓰레기매립장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임을 인정하고, 2005년도에 2백6십만톤의 가정용 전자제품이 폐기되었고 이 중에 오직 13%만이 재활용 된 사실, 많은 전자제품이 납, 수은, 카드뮴, 중크롬(hexavalent chromium) 및 기타 물질을 포함하여 환경과 건강에 위험을 준다는 사실 등을 기술하였다.²⁷⁾ 동시에 많은 수의 폐기되는 전자제품들이 금속, 플라스틱, 납처리된 유리(leaded glass)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재판매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재사용이 자연자원과 에너지를 보존하고 공기와 물의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리노이 주의 2001년 재활용 경제정보 연구지에 의하면 재활용 및 재사용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가 대략 4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740 million의 연간 수입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 프로그램 운영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본 법의 목적이 일리노이 주에서 규제전

자장치의 재활용 등이 성취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확립시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²⁸⁾

2. 재활용 및 재가공처리 대상제품

본 법은 재활용 및 재가공처리의 대상이 되는 전자제품을 “규제전자장치(Covered electronic device; CED)”와 ‘규제가능전자장치(Eligible Electronic Device; EED)’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다. 규제전자장치(CED)는 본 법상 제조자의 엄격한 등록의무가 부여되는 전자제품이다. 이와 반면에, 규제가능전자장치(EED)는 제조자에게 등록의무는 부여되지 않지만, 규제전자장치(CED)와 함께 재활용 및 재가공의 목표량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섹션 10은 양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 (1) ‘규제전자장치(CED)’란 용어는 본 법 전체에 걸쳐 사용되는 용어로서 본법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되는 전자장치이다.²⁹⁾ 규제전자장치는 낡은(obsolete) 가정용 전자제품, 즉 모든 i) 컴퓨터, ii) 컴퓨터 모니터,³⁰⁾ iii) 프린터 iv) 텔레비전으로서,

*** -----

의 15면의 분량(PDF file 기준)이다. 2008년 3월 11일에 제정된 버지니아 주의 법률(컴퓨터 반환 및 재활용법(Computer Recovery and Recycling Act)은 12개 조항의 3-6면 분량에 불과하다.

27) Section 5.

28) Section 5.

29) Section 10.

30) 컴퓨터 모니터(Computer monitor)는 음극선관(cathode-ray tube)이나 평면패널디스플레이(flat panel display)인 전자장치로서 주로 컴퓨터로부터 오는 정보를 전시하고, 오직 가정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구입장소(purchase location)에 관계없이 일리노이 주내의 가정(residence)으로부터 나온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하의 전자장치는 규제전자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자동차의 부속부품인 전자장치, 2) 기능적으로 또는 물체적으로 커다란 장비의 부속부품이나 3) 산업용, 상업용, 도서관 체크아웃(checkout), 교통통제, 키오스크(Kiosk), 보안(security), 정부, 농업, 또는 의료장비 용도 등에 사용되는 부품 등으로부터 떼어낸 전자장치, 4) 세탁기(clothes washer), 의류 건조기(clothes dryer), 냉장고, 냉장냉동고, 에어컨, 건조기(dehumidifier), 물펌프(water pump), 배수펌프(sump pump), 공기정화기 등 안에 포함된 전자장치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

연방법과 주법, 행정규칙하에서 허용되는 한, 수집되거나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위해 처리된 '규제전자장치(CED)'는 '유해한 폐기물(hazardous waste)', '가정폐기물(household waste)', '고체 폐기물(solid waste)', 또는 '특별 폐기물(special waste)'로 간주되지 않는다.

규제전자장치의 첫번째 항목인 '컴퓨터(com-

puter)'는 종종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나 PC로 불리우는 것으로서 데스크 탑(desktop)³¹⁾이나 노트북 컴퓨터(notebook computer)³²⁾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동 타자기(automated typewriter), 전자 프린터(electronic printer), 모바일 텔레폰(mobile telephone), 이동용 손잡이 계산기(portable hand-held calculator), PDA(portable digital assistant), MP3 플레이어, 기타 유사 장치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컴퓨터 주변장치(peripherals)들, 즉 케이블, 마우스, 키보드 등도 본 법상 '컴퓨터'의 범위안에 포함하지 않는다.

텔레비전(television)은 첫째, 크기가 대각선으로 4인치보다 큰 음극선관(cathode-ray tube) 또는 평면패널스크린(flat panel screen)을 가진 전자장치일 것, 둘째, 이때 본 전자장치는 비디오 프로그래밍을 브로드캐스트(broadcast), 케이블(cable), 또는 위성 전송(satellite transmission)을 통해서 수신하도록 의도된 것이거나, 감시카메라(surveillance)나 기타 유사한 카메라로부터 비디오를 받도록 의도된 것일 것, 그리고 셋째, 오직 가정용으로만 사용된 전자장치이어야 한다.

본 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프린터는 데스크탑 프린터, 다기능 프린터복사기 및 프린터·팩스

*** -----

31) 데스크 탑은 이동용으로 설계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외부 모니터와 키보드와 마우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자동 타자기 등(automated typewriter or typesetter)은 포함하지 않는다.
 32) 노트북 컴퓨터는 디스플레이 대각선 크기가 4인치 이상되고, 키보드와 마우스 등이 동반되는 것으로 말하고, 이동용 손잡이(hand-held) 계산기 등은 배제된다.

겸용으로서 가정용에서 나온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다양한 프린트 기술,³³⁾ 즉 레이저 및 LED (전자그래픽), 잉크젯(ink jet) 등을 포함하고, 또한 다기능이나 올인원(all-in-one)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복사, 스캔, 팩스, 프린트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프린터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본 법상의 프린터는 플로어스탠딩 프린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³⁴⁾

(2) '규제가능전자장치(Eligible Electronic Device, EED)' 는 구매장소와 관계없이 일리노이 주의 가정용에서 취환(taken out of service from a residence) 이하의 전자제품³⁵⁾을 가리킨다.³⁶⁾ 한마디로, '규제가능전자장치(EED)' 는 본 법 전체에 걸쳐 제조자들이 재활용 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킨 낡은 가정용 제품군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규제가능전자장치(EED)에 대해서 제조자는 등록의무가 없다. 규제가능전자장치에는 이동용 전화기(mobile telephone), 컴퓨터 케이블, 마우스 또는 키보드, 프로그램 독립 팩시밀리(stand-alone

facsimile machine), MP3 플레이어, PDA, 비디오 게임 콘솔(Video game console), 비디오 카세트 리코더/플레이어,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 또는 유사한 비디오 장치, 휴대용 보조기억장치(Zip drive), 또는 스캐너 등이 포함된다. 연방법과 주법, 행정규칙하에서 허용되는 한, 수집되거나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위해 처리된 '규제가능전자장치(EED)' 는 '유해한 폐기물(hazardous waste)', '가정폐기물(household waste)', '고체 폐기물(solid waste)', 또는 '특별 폐기물(special waste)' 로 간주되지 않는다.

3. 제조자의 개념 및 책임

(1) 제조자의 개념

섹션 10은 제조자의 개념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제조자(manufacturer)란 자신의 상품명(brand) 또는 상표(label)하에서 규제전자장치(CED)가 소매점에서 매매되거나 매매되었던 자 또는 그의 이익승계인(successor in interest)³⁷⁾을

*** -----

33) laser and LED (electrographic), ink jet, dot matrix, thermal, and digital sublimation.

34) Printers do not include floor-standing printers, printers with optional floor stand, point of sale (POS) receipt printers, household printers such as a calculator with printing capabilities or label makers, or non-stand-alone printers that are embedded into products that are not CEDs.

35) Mobile telephone; computer cable, mouse, or keyboard; stand-alone facsimile machine; MP3 player; portable digital assistant (PDA); video game console, video cassette recorder/player, digital video disk player, or similar video device; zip drive; or scanner.

36) Section 10.



가리킨다. 하지만, 규제전자장치를 판매하거나 생산하지 않고 오직 상표 소유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생산자 또는 이익승계인이 제조자가 된다.

소매 매도인(retail seller)과 생산자 모두의 상품명(brand) 또는 상표(label)하에서 규제전자장치가 판매된 경우에는, 생산자 또는 그의 이익승계인이 본 법상의 제조자가 된다. 규제전자장치의 소매 매도인(retail seller)은 만약 소매 매도인이 환경보호국에 서면통지를 보내어 본 법하에서 규제전자장치의 제조자로서의 책임을 승낙하고, 책임질 규제전자장치의 종류를 지정한 경우에는 한가지 이상의 규제전자장치의 제조자가 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 제조자의 책임

섹션 30는 제조자의 책임을 상세하게 (a)~(o) 항목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1) 등록(Registration)

등록의무의 객체가 되는 제품은 규제전자장치(CED), 즉 텔레비전, 컴퓨터, 컴퓨터 모니터 및 프린터에 한정된다. 따라서 규제가능전자장치(EED)는 본 법상 제조자가 환경보호국에 등록

할 의무가 없다.

일리노이 주 내에서 판매되는 텔레비전, 컴퓨터, 컴퓨터 모니터 및 프린터 제조자는 환경보호국에 일정기간까지³⁸⁾ 등록하고 2010년부터 매년 프로그램에 대해 \$5,000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³⁹⁾ 등록비는 그 이후 년도부터는 인플레이션 정도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프로그램 실시 이후, 제조자가 등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새로운 상품명(a new brand)하에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최초 판매 및 판매청약후 30일 이내에 기존의 등록보고서를 새 상품명을 추가시킨 변경을 하여야 한다.⁴⁰⁾ 프로그램 년도(2010년 및 그 이후 년도) 1월 1일 이후 규제전자제품을 일리노이 주에서 처음으로 판매하거나 판매청약을 한 제조자는, 제품의 판매 이전에 환경보호국에 섹션 30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⁴¹⁾

등록시 제조자는 다음 프로그램 년도에 판매에 제공될 위 상품들에 대한 제조자의 상품명 목록(lists of brands)을 포함시켜야 한다.⁴²⁾ 또한 일리노이 주에서 판매된 규제전자제품(컴퓨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텔레비전)이 유럽의회의 RoHS⁴³⁾ 지침서(RoHS Directives 2002/95/EC)

37) 이익 승계인이란 한국의 포괄승계인과 특별승계인 개념을 포함한 것으로 사료된다.

38) 2010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009년 4월 1일 이전, 2011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0월 1일까지 등록 해야 한다.

39) Section 30 (a), (b).

40) Section 30 (a).

41) Section 30 (c).

42) Section 30 (a)(1), (2).

하에서 납, 수은, 카드뮴 등⁴⁴⁾에 설정된 최대집중가치(maximum concentration values)⁴⁵⁾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공개하는 진술서(statement disclosing)를 등록에 포함시켜야 한다.⁴⁶⁾ 그리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들을 밝혀야 한다.

2) 제조자 재활용 및 재사용 목표량(Manufacturer goals)

각 제조자는 섹션 19에서 설정된 제조자 개인 재활용 및 재사용 목표치에, 해당처리제품의 총 무게(total weight)가 일치하거나 초과하도록 규제전자장치(CED)나 규제가능전자장치(EED)를 재활용, 재사용처리를 해야 한다.⁴⁷⁾ 제조자가 섹션 19에서 설정된 그의 개인별 재활용 및 재사용 목표치를 충족하였는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크레딧을 산정한 수치조정(adjustment)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법은 크레딧의 형태로 제조자에게 재활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⁴⁸⁾ 제조자는 달성 목표치에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재사용(for reuse)을 위해 처리된 규제전자제품의 전체 무게는 두배로 계산

된다. 초중고등학교 또는 1986년 연방세법(IRC)의 섹션 501(c)(3)상의 비영리단체에 제공되고, 기부된 주된 목적이 저소득층 자녀와 가족 또는 장애인들을 돕고자 한 경우에는 재사용을 위해 기부된 전체 전자제품의 무게가 3배로 계산된다. 시골 지역(rural area)에서 수집된 전체 전자제품의 무게는 두배로 계산된다.

제조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독립된 제3자 감독자(independent third-party auditor)를 고용하여 통계적으로 재활용업자와 재가공자가 받은 의미있는 리턴량(return share)에 대해 샘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⁴⁹⁾ 오직 환경보호국에 '등록된(registered)' 재활용자와 재가공자만이 제조자의 재활용, 재가공 목표량을 달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⁵⁰⁾

제조자는 첫번째 2년간의 프로그램기간 동안 그들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세번째 년도에 제조자는 매년 목표치의 60%를 달성할 것이 요구되고 실패한 경우에는 파운드 당 0.70달러의 벌금

*** -----

43) RoHS란 전기 전자기기에 위해한 물질의 사용제한을 가리킨다(Restrict of hazardous substances).

44)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독성물질이 대상에 포함된다. lead, mercury, cadmium, hexavalent chromium, polybrominated biphenyls(PBBs), and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Es).

45) 최대집중가치(Maximum Concentration Values, MCVs)란 유럽의회에서 각 RoHS 제한물질에 대해 유럽의회가 설정한 제한량(limits)을 가리킨다. 최대집중가치(MCV) 제한은 각 제품을 구성하는 동일종류의 물질(homogenous materials)에 적용된다.

46) Section 30 (a)(3)(A).

47) Section 30(d).

48) Section 30(d) (1), (2), (3).

49) Section 30(e).

50) Section 30(f).



을 내야 한다. 네번째 및 그 이후의 년도에는 제조자의 최소 재활용 목표치는 75%까지 증가하게 된다. 다른 말로, 만약 제조자가 프로그램 시작 3년차에 60%, 4년차 및 그 이후의 매년도에 75%까지 재활용 목표치를 달성하는 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제조자는 또한 섹션 40에서 소매업자의 교육 캠페인을 보완하고 상응하는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consumer education program)을 발달시키고 유지하여야 한다.⁵¹⁾

2010년 1월 1일부터 제조자는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타 본 법상의 규정에 위반한 규제전자제품(컴퓨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텔레비전)을 판매할 수 없다.⁵²⁾ 뿐만 아니라 제조자의 상품명(brand name)이 규제전자제품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지 않거나, 시각적으로 판독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전자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⁵³⁾

4. 재활용자, 가공자, 소매업자, 환경보호국의 책임

(1) 재활용자와 가공자의 책임

재활용자(recycler)란 규제전자장치(CED)나

규제가능전자장치(EED)의 재활용에 관련된 자를 가리킨다.⁵⁴⁾ 그러나, 기존의 재활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전자통신 전달자(telecommunications carriers), 전자통신 제조자(telecommunications manufacturers), 또는 상업용 이동서비스 제공자(commercial mobile service providers)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활용(recycling)이란 폐기될 수 있었던 규제전자장치(CED)나 규제가능전자장치(EED)가 수거, 분리, 또는 처리되어 원자재나 제품의 형태로 '경제적 활동흐름(economic mainstream)'으로 돌아오게 된 '방법(methods), 기술(technique) 또는 처리(process)'를 가리킨다. 재활용은 규제전자장치나 이용가능전자장치의 수집(collection), 운송(transportation), 해체(dismantling), 및 절단(shredding)을 포함한다.

재가공자(refurbisher)란 규제전자장치나 이용가능전자장치를 재사용을 위해 처리하는 자를 가리킨다.⁵⁵⁾

섹션 50는 재활용자와 재가공자의 등록 및 기타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 년도의 1월 1일 이전에 재활용자 및 재가공자는 환경보호국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2000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⁵⁶⁾ 2011년부터는 등록비는

*** -----

51) Section 30(m).

52) Section 30(n).

53) Section 30(o).

54) Section 10.

55) Section 10.

56) Section 50(a), (b).

인플레이션 정도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재활용자와 재가공자는 본 법에서 만들어진 환경 및 안전기준(the environmental and safety standards)을 준수하여야 한다.⁵⁷⁾

재활용자와 재가공자는 상업용 일반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이나 이에 상응한 기업보증(corporate guarantee)을 유지하여 사고 및 기타 긴급사건을 전보하여야 한다.⁵⁸⁾ 또한 ‘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보험(pollution legal liability insurance)’도 유지하여 관련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할 수 있어야 한다.

재활용업자와 재가공자는 매년 내부 및 외부 감사관(internal and external auditor)에 의해 확인된 ‘환경적 건강 및 안전 검사(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audit)’ 완료를 입증하는 파일문서를 유지하여야 한다.⁵⁹⁾

재활용자와 재가공자는 보증금(bonds)나 기업보증(corporate guarantee)과 같은 적합한 보장방법(adequate assurance)을 준비하여 그들의 제품 집적소의 청소정화(cleanup)을 포함한 시설물 폐쇄(closure)의 환경적 및 기타 소요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⁶⁰⁾

재활용업자와 재가공자는 규제전자제품 및 규제가능전자제품으로부터 나온 구성부품 및 자재(components and materials), 즉, 플라스틱, 금속, 서킷 보드(circuit boards) 등이 송부되는 시설물을 선택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due diligence principles)에 따라야 한다.⁶¹⁾

재활용자와 재가공자는 중고제품이나 자재(materials)와 관련된 연방법, 국제법, 계약(agreements)을 준수하여야 한다.⁶²⁾ 규제전자제품과 이용가능전자제품의 수출의 경우, 재활용업자와 재가공자는 미연방과 수입국가, 운송전달국가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준수행위를 기록하는 적합한 사업기록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어떤 재활용업자나 재가공자도 이러한 미국의 수입 및 운송국가의 요구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브로커 등(intermediaries)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재활용업자와 재가공자는 이하와 같은 수출기록(export records)을 최소 3년간은 유지할 의무가 있다:

- ① 운송물이 수출되는 시설명 및 주소(the shipment contents and volumes)
- ② 운송내용물 및 운송량(shipment content

*** -----

57) Section 50(d)(2).

58) Section 50(d)(3).

59) Section 50(d)(4).

60) Section 50(d)(6).

61) Section 50(d)(7).

62) Section 50(d)(12).



and volume)

- ③ 목적지 시설의 운송내용물 사용목적
- ④ 운송내용물과 관련하여 목적지 시설이 요구한 구체적 사항
- ⑤ 규제전자제품 제조자에게 적용되는 수출용 운송물이 목적지 국가의 모든 관련법규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확인.⁶³⁾

재활용업자와 재가공자는 하드 드라이브 및 기타 데이터 저장장치상의 데이터 파쇄(destruction)나 삭제처리(sanitization)시 산업계열 허용절차(industry-accepted procedures)를 이용해야 한다.⁶⁴⁾

(2) 소매업자의 책임

소매업자(retailer)란 아웃렛 매장, 카탈로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컴퓨터, 컴퓨터 모니터 또는 텔레비전을 소매로 일리노이 주 내의 개인들에게 매도나 임대하는 자를 가리킨다.⁶⁵⁾ 본 법의 목적상, 소매에 의한 개인에 대한 매매는 가정용 매매(sales for residential use)로 간주된다(considered). 소매업자는 컴퓨터, 컴퓨터 모니터 또는 텔레비전을 일리노이 주 안에 있는 개인들에게 직접 소매로 판매하는 제조자를 포함한다.

소매업자는 규제전자제품의 가정용 소비자에게 제품의 수명종료시 가능한 선택(end-of-life options)에 대해 주된 정보제공자(primary source of information)가 되어야 한다.⁶⁶⁾ 따라서 매매시 소매업자는 각 가정용 소비자에게 주 환경보호국의 웹사이트상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환경보호국의 웹사이트는 소비자가 어디서(when)그리고 어떻게(how) 규제전자장치를 재활용하거나 재사용을 위해 반환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2010년 1월부터 소매업자는 소비자들에게 재활용 정보(recycling information)를 제공하여야 한다.⁶⁷⁾ 소매업자들은 이하의 전자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① 제조자가 환경보호국에 등록하지 않은 제품 및 관련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제품, ② 상품명(brand name)이 제품에 부착되지 않은 제품.⁶⁸⁾

각 시기별로 또한 소매업자는 각 텔레비전 제조자에게 모델별로 소매점에서 주내의 개인에게 판매된 텔레비전 수를 각 제조자의 브랜드명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 -----

63) Section 50(d)(14).

64) Section 50(d)(15).

65) Section 10.

66) Section 40(a).

67) Section 40(b).

68) Section 40(b).

(3) 수집자의 책임

수집자(Collector)는 규제전자장치(EED)와 사용가능전자장치(Eligible electronic devices)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공을 위해 가정으로부터 제품을 직접 받는 자를 가리키며, 이들은 제조자(manufacturers), 재활용업자(recyclers), 재가공자(refurbishers) 등을 포함할 수 있다.⁶⁹⁾

프로그램 년도 1월 1일이전에 매년 한 명이상의 제조자, 재활용자, 재가공자 등을 위해 규제 전자제품이나 규제가능전자제품을 수거하는 수집자는 환경보호국에 등록하여야 한다.⁷⁰⁾ 이때 수집자는 수집된 전자제품의 위치(location) 및 총 무게(total weight)를 주 환경보호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수거 위치 및 무게는 환경보호국이 소비자의 재활용 프로그램 참가사실을 조사하는 수단이 된다.

(4) 주 환경보호국의 책임

일리노이 주 환경보호국(이하 '환경보호국' 으로 칭함)은 본 법하의 재활용 및 재사용 프로그램 관리운영자로서 활동하게 된다.⁷¹⁾ 특히, 환경보호국은 등록비(registration fees)를 징수하고,

제조업자들의 매년 재활용 목표치를 결정(determine)하여 그 책임량을 제조업자들에게 할당(assign)하여야 한다.⁷²⁾ 또한 환경보호국은 제조업자들의 매년 재활용 목표치의 수행 준수여부를 감시(monitor)하고 주 법무부장관에게 위반사실을 신고(report)하여야 한다.⁷³⁾ 그리고 2012년 일반의회(General Assembly)에 보고할 프로그램 평가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한다.⁷⁴⁾

5. 규제전자장치(CED) 재활용 및 재사용 목표량 설정

섹션 15은 주 전체적으로 규제전자장치의 재활용 및 재사용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일리노이 주의 2010년 첫번째 프로그램 재활용 목표는 개인당 2.5 파운드이다.⁷⁵⁾ 그 후 일리노이 주의 재활용 목표치는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정도에 기초하여 증가하거나 낮아질 수 있다.⁷⁶⁾ 구체적으로 텔레비전 제조자의 목표량은 섹션 16에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의 제조자 목표량은 섹션 17에서 나타나 있다.

섹션 16은 모든 텔레비전 제조자에 대한 주전체적 재활용 또는 재사용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

*** -----

69) Section 10.
70) Section 55.
71) Section 20.
72) Section 20.
73) Section 20.
74) Section 20.
75) Section 15.
76) Section 15.



다. 텔레비전 제조업자들은 집합적으로(collectively) 2010년 일리노이주 재활용 목표치의 53%를 책임져야 한다. 2010년 이후, 텔레비전 제조업자들의 매년 집합적 책임량은 이전 년도(previous year)에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해 처리된 텔레비전의 양(amount)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섹션 17은 모든 컴퓨터, 모니터 및 프린터 제조자에 대한 주 전체 재활용 또는 재사용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컴퓨터, 모니터 및 프린터 제조자는 집합적으로 일리노이 주의 2010년 재활용 목표치의 47%를 책임져야 한다. 2010년 이후, 컴퓨터, 모니터 및 프린터 제조자들의 집합적 책임량(collective share)는 이전 년도(previous year)에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해 처리된 컴퓨터, 모니터 및 프린터의 양(amount)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섹션 18은 시장 점유율과 리턴율의 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리노이주에서 각 제품에 대한 제조자의 목표량을 산출할 때 이중기준의 원칙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섹션 18에서는 제조자의 목표량 산출시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market share)을,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에 대해서는 리턴율(return

share)에 기초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텔레비전 제조자에 대한 재활용 또는 재사용 목표치는 제조자의 시장 점유율(market share)에 기초하게 된다.⁷⁷⁾ 각 텔레비전 제조자는 일리노이 주의 매년 재활용 목표치의 일정부분을 할당받아야 한다.⁷⁸⁾ 이때 할당량은 이전 년도(previous year) 소매 매출량의 퍼센티지에 기초하여 결정된다.⁷⁹⁾ 한편 각 컴퓨터, 모니터, 및 프린터 제조자는 일리노이 주의 재활용 목표치의 일정부분을 이전 년도에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해 수집된 리턴물량에 기초하여 결정하게 된다.⁸⁰⁾

산출계산법을 살펴보면 섹션 19는 개인 제조자별 재활용 및 재사용 목표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있다.

- ① 텔레비전 개인 제조자들의 목표치는 섹션 16에서 설정된 주전체의 목표치와 섹션 18하에서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을 곱한 값이 된다.⁸¹⁾
- ② 반면에, 컴퓨터,모니터,프린터의 개인 제조자들의 목표치는 섹션 17에서 설정된 주전체의 목표치에 섹션 18하에서의 리턴율(return share)을 곱한 값이 된다.⁸²⁾

*** -----

77) Section 18.
 78) Section 18.
 79) Section 18.
 80) Section 18.
 81) Section 19.
 82) Section 19.

V. 맺는말

미국의 주의 대부분은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하고는 전자폐기물 재활용, 재사용처리, 처분 등의 비용을 제조자에게 부담시키는 제조자확대책임제(Extended Manufacturer Liability)를 취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일리노이 주도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전자폐기물 관련법을 제정한 주들에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제품 생산자들은 최종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전자제품을 설계하여야 할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리노이 주의 입법내용을 살펴볼 때, 제조자의 등록의무 및 재활용 등 목표량 달성 의무가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등록 및 책임규정 위반시 높은 민사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외에도, 구체적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제조자는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은 규제전자제품(컴퓨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텔레비전)을 판매할 수 없다. 소매업자도 마찬가지로 2010년 1월부터 소매업자는 소비자들에게 재활용 정보(recycling information)를 제공하여야 할 뿐 아니라, ① 제조자가 환경보호국에 등록하지 않은 제품 및 관련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제품, ② 상품명 (brand name)이 제품에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제품별 개인 제조자(individual manufacturer)의 매년 목표량 할당계산시,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을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에

대해서는 리턴율(return share)을 각각 적용함으로써 수치적출에 최대한 합리성과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재활용자와 재가공자도 등록 및 등록비 납부의무외에 엄격한 환경 및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전자폐기물관련 입법이 각 주마다 내용이 다르고 요구사항이 달라 미국의 제조자들은 제품이 판매되는 장소의 해당 주법규를 상세히 살펴보고 각 주마다 다른 준수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경영상의 번거로움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 전자제품 수출업체가 주의해야 할 항목이다. 미국의 전자제품 제조자들은 연방차원의 전자폐기물처리 입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유진호

(미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위원, 미국변호사)